

폐플라스틱 처리와 환경관련 법규동향

Plastic and Environment Law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I. 서언

'99년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환경부가 또 다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규제를 강화하려는 법 개정(안)을 '99년 6월에 발표한 바 있다.

플라스틱 봉투 무상제공억제 대상범위를 약국, 서점을 포함하여 모든 도·소매 업소까지 확대하고 1회용 컵, 접시, 용기의 사용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강화안이 발표되자 도시락 제조업체들과 관련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들이 관계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99년 8월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 앞에서 월기대회를 개최하고 환경부 장관을 면담한 바도 있다.

업계의 반발이 심하고 실제로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의문도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되지 못하였으며 관련업계에서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소송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법적 대응도 강구한 바 있다.

한편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에서는 서

울시 성동구청을 비롯해 4개 구청에서 PE봉투 재활용시범사업을 4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9월에는 서울시 양천구청을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PSP용기 재활용사업을 추진중이고 금년에 들어서는 혼합 폐플라스틱을 열원으로 이용하는 고형연료화 공장을 설립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플라스틱의 처리문제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잘못된 합성수지 부담금제도 때문이다. 다행히 2000년 7월 24일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그동안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되었던 PSP용기와 봉투류가 재활용 품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향상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품목이 다양하며 사용처가 광범위한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일부 생산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여타 제품에 대한 대책이 없어 획기적인 재활용 활성화방

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전문성도 결여되어 재활용 비용 경감을 위한 노력미약 등 종합적 대책이 미흡하고 기존의 합성수지 부담금제도가 병행 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2. 환경관련 법규개정 주요내용

환경부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2000. 7. 24 환경부 공고 제2000-108호)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생산단계에서 환경 친화적인 소재선택·디자인·포장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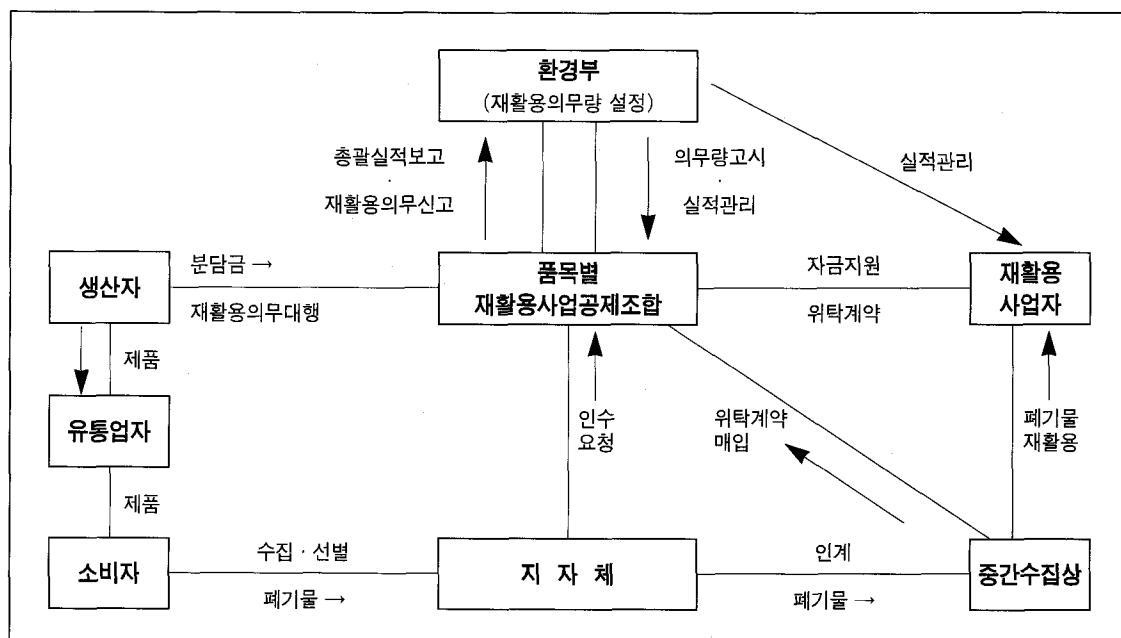
체 판매망을 활용한 회수체계구축 등 재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 처리책임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2-1.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개념

2-1-1.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 분담

- 1) 소비자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품목별로 분리배출
- 2) 지방자치단체 : 분리수거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분리수거
- 3) 사업자 : 자체가 분리한 폐기물을 사업자 스스로 또는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 위탁하여 재활용

(표 1) 재활용 체계



2-2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 재활용 의무부과

- 1) 정부가 지자체의 분리수거량·재활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 의무총량을 품목별로 설정·고시
- 2) 개별 사업자의 재활용 의무량은 제품출고량, 포장재사용량, 제품별 수거체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3) 운영체계 제도

2-3.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는 품목

- 현행 예치금 대상 품목과 일부 부담금 품목 및 포장재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대상품목은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표 2) 재활용 대상품목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기타 예치금 품목	타이어, 윤활유, 전자류, 형광등 (=현행 부담금 품목) 등
포장재	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 재질의 용기류 포장재와 용기류가 아닌 기타 제품 포장재 등

※ 구체적인 품목은 시행령에서 확정

(표 3) 재활용 의무대상이 되는 포장재

합성수지	(1)상자 및 케이스 (2)병 (3)컵 모양의 용기 (4)접시(받침접시, 트레이) (5)튜브모양의 용기 (6)봉투(1회용 봉투·쇼핑백 포함) (7)(1)~(6)에 준하는 구조, 형상 등을 가진 포장재 (8)랩 등 필름류 포장재 (9)상품의 보호 또는 고정을 위하여 사용된 것(발포폴리스티렌 완충재 등)
종 이	(1)상자 및 케이스 (2)컵 모양의 용기 (3)접시(받침접시, 트레이) (4)봉투(1회용봉투·쇼핑봉투 포함) (5)(1)~(4)에 준하는 구조, 형상 등을 가진 포장재 (6)용기의 마개, 뚜껑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7)포장지
유 리	(1)병 (2)컵 모양의 용기 (3)(1)~(2)에 준하는 구조, 형상 등을 가진 포장재 (4)용기의 마개, 뚜껑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금 속	(1)캔 (2)컵모양의 용기 (3)(1)~(2)에 준하는 구조, 형상 등을 가진 포장재 (4)용기의 마개, 뚜껑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비고 : 1. 복합재질로 된 포장은 중량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질로 분류

2. 수송용 포장재는 제외(단, 음료, 과자제품 등의 선물셋트 포장은 수송용 포장으로 보지 않음)

2-4. 재활용 의무생산자 (대상업종 및 사업장)

2-4-1.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범위

1) 생산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재생산자, 제품생산자, 유통·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생산·유통체계 안에 있는 모든 업체를 포함하나 주책임자 (재활용의무 생산자)에게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시장 메커니

(표 4) 재활용 의무대상자

구 분	주책임자 (재활용 의무생산자)
가전/타이어/윤활유 등	제품 생산자
포장재	포장재 이용자/생산자/판매업자(일부품목)
수입상품	수입업자

증을 통하여 자율 조정

2-4-2. 대상 사업장

- 포장재를 이용·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수십만개에 달해 모든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포장재 사용량(생산량), 기업의 매출액, 종업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를 선정

2-5. 재활용 의무량 및 의무이행 인정기준

2-5-1. 재활용 의무량

- 개별사업자의 재활용 의무량 = 전년도 출고량 × 재활용 의무율

2-5-2. 재활용 의무이행 인정기준

- 폐기물 관리법상의 재활용 신고자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회수·재활용한 폐기물량으로 함

2) 재활용방법은 물질회수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무대상 품목에 따라 고체 연료화, 가스화, 유화 하는 경우도 재활용으로 인정

3) 제도 시행초기에는 선별하여 압축, 파쇄 후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비축하는 경우도 일정 비율 인정

2-6. 재활용 부과금 침 합성수지 부담금

2-6-1. 재활용 부과금

- 매 사업 종료 후 의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부과금 징수

(표 5)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업체

구분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포장재 제조업 및 수입업		종이포장재 제조업(21029),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25293), 유리포장재 제조업(26104), 금속포장재 제조업(28991)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업 및 수입업	음식료품 제조업(15)	고기·과일·채소·유지가공업(151), 낙농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152), 곡물가공품·전분·사료제조업(153), 과자·빵 떡 등 기타식품 제조업(154), 음료·주류제조업(155)	
	의약품·비누 화장품 등 화학제품 제조업(243)	살균·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2431), 도료·잉크 및 유사제품(2433), 의약품(242), 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2433), 접착제·윤활유 등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42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181), 가방·핸드백 류 제조업(1921), 신발제조업(193),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 유선통신기기제조업(32201),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3694), 양말 등 편조의복 제조업(1730),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2213), 선풍기·전열기기 등 기타 가정용 기구(295),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업(322), 사무 및 회화용품제조업(21291), 문구용지제조업(21291), 노트앨범유사제품제조업(21291),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21292), 담배제조업(16)	

2-6-2. 합성수지 부담금

- 현행 플라스틱 원료에 부과하는 합성수지 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활용 실적에 따라 하향 조정

(표 6) 현행제도와 차이점

2-7. 적용시기 및 현행제도의 차이점

- 2-7-1. 적용시기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정과 1회용품억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 분	예치금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생 산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적 재활용 의무 부과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 포장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에게 회수 · 처리비를 예치하게 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예치금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재활용 의무 부과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제품 · 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에게 일정량의 회수 · 재활용 의무 부과
의무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출고량(수입물량)에 품목별 예치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분리수거량,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재활용 의무량 산정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전기,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등 6품목 1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예치금 품목 외에 비닐봉투, PSP등 각종 제품 포장재 포함 ※현행 부담금 품목 중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화장품 · 과자제품 용기 및 형광등은 부담금 면제 ※합성수지 부담금 중 포장재로 사용되는 분량만큼 부담금 감면
의무대상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모든 사업장 ※포장재의 경우 용기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를 제외한 품목은 당해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모든 사업장 ※포장재의 경우 ①포장재 제조업자 · 수입업자 ②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③포장재(쇼핑봉투,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실시
지자체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분리수거 (예치금제도와 별개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구역내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발생량 분리수거량 매년 공표 •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맞게 분리수거 · 보관 •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폐기물 인계 · 인수 계약 체결
의무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미이행자는 예치금을 반환 받을 수 없으므로 간접적 강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미이행자로부터 재활용 부과금 징수